

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523
------	-----

2023.03.03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2월 6일, 이원형 의원(찬성자 19명)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2월 9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】

-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(2023.3.3.) 상정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 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이원형 의원)

1. 제안이유

- 본 조례의 제정(2021.1.7.) 이후 한 차례 개정(2022.4.28.)되었으나, 개정과정에서 인용조문 번호와 용어가 일부 오기되어 조례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정비함.

2. 주요내용

- 잘못 인용된 조문번호를 정비함(안 제2조 및 제7조).
- 잘못 표기된 용어를 정비함(안 제14조)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조례의 제정 이후 개정과정에서 인용조문 번호와 용어가 일부 오기 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발의됨.

나. 오기된 조문번호와 용어의 정비

- 「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제정 이후 1차례 개정(2021.1.7.)되면서 ‘다른 조례와의 관계’ (제5조)가 추가되어 종전의 제5조부터 제15조가 제6조부터 제16조로 변경됨.

<조례 개정 사항>

종 전	현 행(2021년 1월 개정)
제1조(목적), 제2조(정의), 제3조(적용대상), 제4조(시장의 책무)	제1조(목적), 제2조(정의), 제3조(적용대상), 제4조(시장의 책무)
<신 설>	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
제5조(지원계획 등), 제6조(실태조사), 제7조(지원 사업 등), 제8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,	제6조(지원계획 등), 제7조(실태조사), 제8조(지원 사업 등), 제9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,

제9조(위원회 구성), 제10조(위원의 임기), 제11조(위원의 해촉), 제12조(위원장의 직무), 제13조(위원회 운영), 제14조(협력체계 구축), 제15조(시행규칙)	제10조(위원회 구성), 제11조(위원의 임기), 제12조(위원의 해촉), 제13조(위원장의 직무), 제14조(위원회 운영), 제15조(협력체계 구축), 제16조(시행규칙)
---	--

- 그러나 다른 조문에서 인용된 조문번호가 함께 개정되지 않아 잘못 인용된 조문번호가 존치되었고 표현이 맞지 않는 용어의 수정이 필요하여 개정안이 발의됨.

< 조례일부개정안 주요내용 >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2. "필수업무"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. 가. (생 략) 나.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.)이 정하는 업무 3. "필수노동자"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가. (생 략) 나.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-----.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<u>제9조</u> ----- ----- ----- 3. ----- ----- ----- -----.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<u>제9조</u> ----- -----

시장이 지정하는 사람	-----
제7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필수업무의 일반현황, 근무환경,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	제7조(실태조사) ① ---- 제6조-----
②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4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	제14조(위원회 운영) ① -----
1. 시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다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	----- -----.
2. ~ 3. (생략)	1. ----- --다른-----
② ~ ④ (생략)	----- 2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- 이는 조례의 적용과 해석상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며, 향후 조례 제·개정에 있어서 시민이 조문과 용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8명, 전원찬성)

V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원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523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2월 06일

발 의 자: 이원형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성준, 김용일,
김인제, 김지향, 박영한,
박칠성, 봉양순, 서준오,
성흠제, 왕정순, 유정희,
윤종복, 이민옥, 이영실,
임규호, 임만균, 최민규,
한·신 의원(19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제정(2021.1.7.) 후 1차례 개정(2022.4.28.)되었으나 개정과정에서 인용 조문번호와 용어가 일부 오기되어 조례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정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잘못 인용된 조문번호를 정비함(안 제2조 및 제7조)
- 나. 잘못 표기된 용어를 정비함(안 제14조)

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
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나목 중 “제8조”를 “제9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“제8조”를 “제9조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제5조”를 “제6조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제1호 중 “다른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"필수업무"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.</p> <p>가. (생 략)</p> <p>나. <u>제8조</u>에 따른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.)이 정하는 업무</p> <p>3. "필수노동자"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가. (생 략)</p> <p>나. <u>제8조</u>에 따른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</p> <p>제7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<u>제5조</u>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필수업무의 일반현황, 근무환경,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14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</p> <p>1. 시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14조에 <u>다른</u>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</p> <p>2. ~ 3. (생 략)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,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-----,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<u>제9조</u>----- ----- ----- 3. ----- ----- ----- -----,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<u>제9조</u>----- ----- -----</p> <p>제7조(실태조사) ① ---- <u>제6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,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(위원회 운영) ① ----- ----- -----, 1. ----- -----<u>다른</u>----- 2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